C - 37 - 2011

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안전보건공단 김성일

ㅇ 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

o 제·개정경과

- 2005년 8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
- 2005년 10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11년 12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(국토해양부)
  - 건설공사의 안전(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)
  - 건설공사 안전점검편람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C - 37 - 2011

#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의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중 가스관, 상수도관, 하수도관, 전력 및 전기통신시설 , 지역난방배관 등에 근접해서 작업하는 굴착공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일반사항

- (1) 굴착공사 시 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 후 매설물의 위치, 규격, 구조 및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2)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, 매설물 방호방법, 관계자의 입회, 긴급 시 연락방법, 안전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한다.

#### C - 37 - 2011

- (3) 매설물의 종류,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 로자 모두가 주의할 수 있게 한다.
- (4)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또는 천공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깊이 이하 2m 정도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시험굴착을 행하여야 한다.
- (5) 매설물이 굴착 구간내에 노출되는 경우 이설을 원칙으로 하나 이설작업이 곤란한 경우 매달기 방호를 실시한다.
- (6) 매달기 방호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한다.
- (가)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버클을 충분히 조인다.
- (나) 완충 목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을 방지하고 로프의 처짐을 수시로 점검한다.
- (7) 노출된 매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.
- (8) 매설물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9) 공사현장의 돌발사고를 대비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.
- (10) 공사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부득이 출입을 요하는 자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11) 연락, 협의사항,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(12) 화기에 취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매설물 주위에서 용접기, 절단기 등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.

C - 37 - 2011

- (13) 노출된 매설물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물 받침방호를 설치하고 매달기 방호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(14)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.

## 5. 지하매설물 줄파기 작업 시 안전대책

- (1) 공사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대장 및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조사한다.
- (2) 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 위치는 실제 위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력굴착으로 재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지하매설물의 매설깊이는 공사구역 내 인근 맨홀에서 개략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줄파기 작업 시 굴착 깊이는 인력으로 최소 1.5m 이상 실시하고 배관탐지기로 매설여부를 확인 후 관노출시까지 인력줄파기를 시행한다.
- (5) 줄파기 작업 중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다른 지장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오래된 도로부의 지하에서는 매설물이 보통구간보다 깊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시행하여야 한다.
- (7) 줄파기 결과 지하매설물이 확인되었을 때 현장 근로자 누구나가 알 수 있 도록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한다.

#### 6. 지하매설물별 안전대책

6.1 가스관 안전대책

C - 37 - 2011

- (1) 굴착공사 착공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스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가스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한다.
- (2) 가스관의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(3) 천공은 가스관 외면으로부터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한다.
- (4) 노출된 가스관의 길이가 15m 이상이 되는 배관으로 매달기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진동방지 기능을 목적으로 15m 이내의 간격으로 횡방향 방진조치를 취한다.
- (5) 노출된 가스관 주위에는 가스 누출 시에 이를 감지하기 위한 자동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측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.
- (6) 가스관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자를 임명한다.
- (7) 가스배관 주위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.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가스누출여부의 확인과 안전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8) 노출 가스관은 배관의 피복손상과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고무판, 부직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한다.
- (9) 가스관 근접 장소에서의 화약 발파작업을 금지하며, 부득이 가스관 근접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버력의 비산 및 진동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10) 가스밸브 위치 및 키 보관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### 6.2 상수도관 안전대책

(1) 굴착공사 착공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구간 내에 매설된 상수도 도면 검토 후 탐지기를 사용하여 관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.

C - 37 - 2011

- (2) 굴착공사 착공 전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사예정 구간내의 지하매설 상수 도관 현황도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(가) 상수도관의 수계표시
- (나) 제수밸브 위치 및 방향
- (다) 유수방향표시
- (라) 제수밸브 키 제작 보관
- (3) 노출된 상수도관 및 굴착지점에 인접한 상수도관중 해당지역 동결심도 미달로 인한 동결, 동파가 우려되는 상수도 시설물은 보온조치를 하여 야한다.
- (4) 노출된 관은 보온재로 덮고 표면을 비닐 테이프 등으로 감아서 외수의 침투가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5) 상수도 시설물에 직접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미세한 손괴사항도 상수도관 관리기관과 협의후 복구하고 후속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.
- (6)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관 및 피복도장 부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자갈 이나 암석 등 이 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 흙을 사용하고 관의 양쪽 측면으로 되메우기를 실시한다.
- (7) 되메우기 전 관 받침 시설은 관접합부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파일 제거 시 진동 또는 지반침하로 토류판 뒷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손 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9) 매달기 턴버클 등의 해체는 관의 기초가 마무리되고 관의 중심선까지 되메우 기가 끝난 후 충격이 가지 않도록 서서히 해체하여야 한다.

C - 37 - 2011

(10) 곡관부위 등 취약지점은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공을 실시하여 추후에 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#### 6.3 하수도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

- (1) 기존 하수도관을 절단하여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체시설은 우기를 감안하여 기존 하수도관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하수도관에 근접하여 굴착할 때에는 기존 하수도의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적합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지반이완으로 하수도 연결부가 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토사가 빗물받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공사용수를 하수도에 배수 시에는 미리 토사를 침전시켜 토사가 하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.
- (5) 가설하수도관 설치 시 기존 하수도관과의 연결부분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통수 단면은 기존하수도 단면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.
- (6) 성토 구간의 하수도 시설은 지반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6.4 전력 및 전기통신 시설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

- (1) 공사의 계획단계 등 착공 전에 전력 및 전기통신 설비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조회하고 실태파악을 하여야 한다.
- (2) 소형 브레이커에 의한 케이블 또는 관로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케이블 매설장소 부근은 표면층을 제외하고는 인력굴착을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험굴착을 하여야 한다.
- (3) 지반개량 작업 중 약액 주입재료가 관로 안으로 유입되어 고결됨으로써 케이블의 설치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공법, 시공시기, 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.

C - 37 - 2011

- (4) 흙막이지보공 토류판의 틈새로 토사가 유출되어 관로가 침하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굴착부근의 지반침하 및 관로의 방호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는 응급처치를 함과 동시에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(5) 굴착기로 굴착 중 굴착 깊이가 케이블 또는 관로의 토피보다 얕을 경우에도 백호우의 날 부분으로 관로가 손상될 때가 있으므로 표지를 설치하거나 인력 으로 굴착한다.

## 7. 안전점검 사항

- (1) 긴급 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의 확립 여부
- (2) 지하매설물별로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대장을 열람하여 전력선, 전화선, 가스관, 수도관, 하수관, 공동구 등의 시설에 대해 평면 및 밸브차단위치, 구조, 규격, 수량, 상태 등을 관계자와 협의 및 확인여부
- (3) 지하매설물 도면에는 밸브 및 맨홀위치 표시여부
- (4) 지하매설물중 불명확한 관의 처리대책
- (5)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공사 시 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여부
- (6) 지하매설물 부위 굴착 시 인력굴착 여부
- (7) 지하매설물 또는 가공 공작물에 대한 방호 및 이설대책
- (8) 지하매설물의 진동방지대책
- (9) 안전통로등 지하매설물의 방호상태 점검시설확보
- (10) 지하매설물 파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

C - 37 - 2011

- (11) 지하매설물의 종류, 가스 등의 이동방향 위치, 위험표지 등의 표시
- (12)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
- (13) 가스누출 측정 담당자 지정 및 가스누출 자동경보기가 설치 여부
- (14) 굴착공사 후 되메우기 시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한 보호 시공 여부
- (15) 가스관등 주의에서의 화기 작업 시 안전대책 확보 여부